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834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5월 26일
- 회 부 일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 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2025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서울장학재단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출연의 필요성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라. 주요사업

- 고교 및 대학 분야 장학생 진로활동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직업전문학교 학업활동 장학금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및 해외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 지원사업
- 대학원 분야 연구 및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사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참여한 우수학생 지원사업
- 멘토링, 아카데미 등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등

마. 추경개요

- 추경예산: 2,612,651천원
 - '25년 총 출연금액 12,168,502천원(기존 9,555,851천원)
- 출연금 편성 내용
 -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사업비: 2,612,651천원
- 추경 필요성
 - AI 분야 우수 인재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학업·연구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임.
 - ※ (상반기) 석사 60명 → (하반기) 석사 350명, 박사 100명 지원

바. 기관개요

- 소재지 :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
- 법인설립 : 2009. 1. 8.
- 조 직 : 사무국(2부), 정원 15명 / 현원 12명
- 시설규모: 675 m^2 (사무공간, 회의실(3), 창고)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총 출연금액 : 12,168,502천원
 - 장학사업비 10,940,141천원, 인건비 657,209천원, 운영경비 571,152천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장학재단 출연의 필요성

- 본 출연동의안은 서울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의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사업(이하 “본 사업”) 확대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 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울장학사업 추진)으로 편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

〈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장학사업 추진’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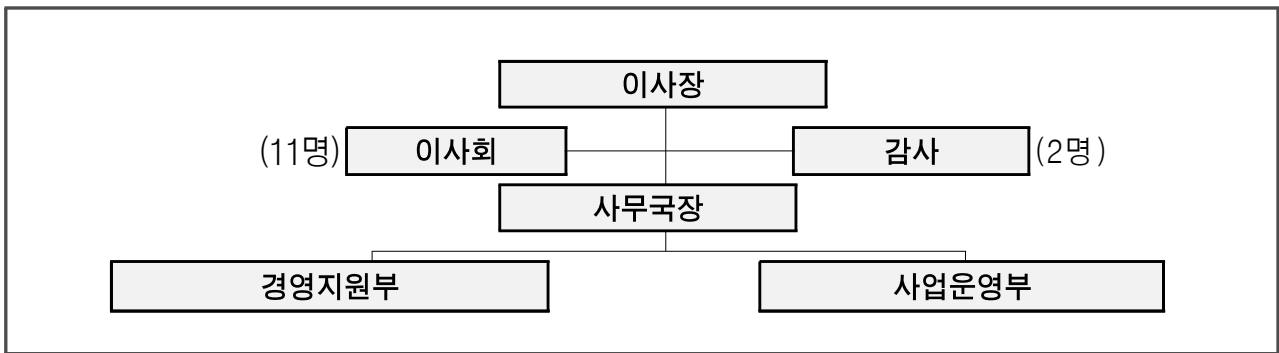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2,168,502	9,555,851	2,612,651
출연금	12,168,502	9,555,851	2,612,651

-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는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장학재단은 2010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사회(이사 9명, 감사 2명)와 사무국(1국 2부, 정원15명/현원14명)을 구성하여, 2025년에는 116억원의 예산으로 13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3천여 명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 연혁 〉

- 2008. 5.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시행
- 2008. 12.8 장학재단 설립허가 승인(시교육청)
- 2008. 12.24 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황영기 초대 이사장 취임)
- 2009. 1.8./1.13 재단설립등기 / 사업자 등록
- 2010. 3.1 재단 독립운영 개시
- 2012. 3.7 이경희 2대 이사장 취임
- 2014. 7.1 문미란 3대 이사장 취임
- 2015. 3.11 문미란 4대 이사장 취임
- 2018. 9.27 유광상 5대 이사장 취임
- 2022. 4.28 이석준 6대 이사장 취임
- 2024. 9.13 남성욱 7대 이사장 취임
- 2025. 4.28 남성욱 8대 이사장 취임

〈 조직 현황 〉



〈 인력현황 〉

구 분	합계	정원					정원 외
		소계	상근임원	2급	3~4급	5~6급	계약직
정 원	15	15	1	1	2	11	-
현 원	14	13	1	1	2	9	1
과부족	△1	△2	-	-	-	△2	1

〈 2025년 서울장학재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2025년 5월 31일 기준, 단위:천원)

구분	재원/대상/요건	인원	연간지원액	예산액	집행액
총계				11,596,628	2,482,068
장학사업운영 합계				9,792,533	2,082,911
교육기회확대사업				7,181,303	1,753,785
대학진로장학금	출연대학학업·진로	1,055	최대400만원	3,735,000	1,598,901
고교진로장학금	출연고등 가정형편	1,020	200만원	2,056,503	500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출연대학독립유공자후손	120	300만원	368,000	0
해외교환학생장학금	출연대학교환학생	60	최대550만원	320,100	0
직업전문학교장학금	출연대학가정형편	200	150만원	301,100	148,500
꿈길장학금	출연고등 학교부적소년	100	200만원	203,000	1,042
선순환인재장학금	출연대학서울권 우수 멘토	50	100만원	50,000	0
하나고장학금	출연고등 사회배려계층	53	기숙사/급식비	31,800	0
청춘스타트장학금	가탁대학보육시설	40	기존200만원 신규300만원	115,800	4,842

구분		재원/대상/요건	인원	연간지원액	예산액	집행액
	우수역량지원사업				2,155,150	222,639
	공익인재장학금	출연대학사회인재	50	400만원	280,000	123,780
	예체능장학금	출연고등저소득특기	180	350만원	656,000	228
	A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출연대학원아공계석사	60	1,000만원	614,000	496
	서울테크스칼러십	위탁대학원아공계외국인	20	2천만원내외	605,150	98,135
	사업위원회운영				17,334	3,509
	장학생선정위원회				15,334	2,650
	자문위원회				2000	859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74,160	9,678
	홍보사업				145,840	8,093
	정보화사업				204,358	70,819
	기타자본적지출(공공위탁사업비반환)				14,388	14,388
	사무국운영(인건비,경비,자산취득비,성과급)				1,270,865	399,157
	예비비 및 기타				533,230	0

〈 2025년 5월말 기준 사업추진 현황 〉

- 장학금 지원 실적

· 서울시 출연금 장학사업: 943명, 1,836,500천원

(단위: 명, 천원)

사업명	성과목표		지원실적		달성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948	8,429,300	943	1,836,500	32.0	21.8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1,055	3,710,000	795	1,590,000	75.4	42.9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1,020	2,040,000	-	-	-	-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120	360,000	-	-	-	-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60	307,500	-	-	-	-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200	300,000	99	148,500	49.5	49.5
서울꿈길장학금	100	200,000	-	-	-	-
서울순환인재장학금	50	50,000	-	-	-	-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53	31,800	-	-	-	-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50	200,000	49	98,000	98.0	49.0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180	630,000	-	-	-	-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60	600,000	-	-	-	-

· 민간지정기탁 및 자체 장학사업: 지원실적 없음

(단위: 명, 천원)

사업명	성과목표		지원실적		달성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0	100,000	-	-	-	-
청춘스타트장학금	40	100,000	-	-	-	-

· 위탁사업: 9명, 81,190천원

(단위: 명, 천원)

사업명	성과목표		지원실적		달성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9	487,140	9	81,190	23.1	16.7
서울테크스칼러십	39	487,140	9	81,190	23.1	16.7

- 이는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AI 혁신도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AI 이공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연구 생태계를 서울 내에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이며, 본 사업의 확대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금(장학사업비)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글로벌 AI 혁신도시’ 보도자료 발췌(’25.2.11.)〉

오세훈,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 만들 것”...AI 중심의 산업 육성 ‘속도전’

- 2월 11일(화) ‘AI SEOUL 2025’에서 AI 산업 육성 7대 핵심 전략 발표
- (인재 / 인프라) 연간 AI 인재 1만명 양성, AI 허브 10배 규모 AI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
- (투자) ‘25~’26년 마중물 투자로 ‘AI’ 분야 신설, 5천억 규모로 조성...GPU 서버 지원 확대
- (산업 융복합/글로벌화) AI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재편, 글로벌 산학연과의 협력·유치↑
- (시민확산) AI 대중화 위해 3월 ‘서울 AI 페스타’ 개최, 10월 ‘SLW’는 AI 비중 확대
- (행정혁신) AI 전용 공공데이터 플랫폼 제공, 서울디지털재단→서울AI재단으로 개편
- 세계 AI 석학 제리 카플란 교수와의 특별대담도...향후 AI 산업 전망 등 인사이트 교류
- 오 시장, “모든 산업 AI 중심으로 육성·재편...글로벌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로 도약할 것”

<인재·인프라·투자부터 산업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 확산, 행정혁신 등 7대 핵심 전략 제시>

- 우선, 연간 1만 명(청년취업사관학교 인재 4천 명, 대학 인재 6천 명)의 AI 인재를 양성해, AI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올해부터 AI 등 이공계 분야 석사 과정 장학금 제도(총 6억 원, 60명 지원)도 신설해 매년 확대하는 등 서울형 인재 발굴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

※ 본 사업은 장학재단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올해 4월부터 첫 시행한 신규 장학사업으로, 서울 소재 일반대학원의 AI 유관 분야 전공의 이공계 석사 과정 재학생 중, AI 기반 기술 및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에게 연구장려금 형태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임.

〈 당초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예산규모: 614,000천원
- 사업기간: 2025년 3월 ~ 12월
- 선발인원: **60명**
- 지원대상: AI 유관 분야 전공의 서울 소재 대학원 이공계 석사과정 입학생
- 지원분야
 - ① AI 기반 기술 연구: AI 기술을 만드는 방법론, 실현가능성 연구
 - ※ 관련 연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데이터, 딥러닝 등
 - ② AI 응용 기술 연구: AI 기술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 ※ 관련 연구: 에이전트, 공공 서비스,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 등
- 장학금: 연간 10,000천원/연 (연구장려금)

☐ 추진경과 및 일정

- 장학금 신청 접수 '25.4.14. ~ 4.25.
- 서류·면접 심사 '25.5.12. ~ 5.23.
- 장학생 선정위원회 '25.5.28.
- 최종발표 '25.6.4.
- 장학증서 수여식(예정) '25.6.17.

※ 2025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평생교육국 제출자료(5.30)

-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상반기 지원 대상인 석사 60명에서 하반기에 석사 350명, 박사 1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석사 장학금 총 17억 5천만원(1인당 5백만원), 박사 장학금 총 7억 5천만원(1인당 750만원), 장학생 선발관리비(1억 1,265원) 등 기정예산 95억 5천 6백만원 대비 27.3%인 총 26억 1천 3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장학사업 추진’ 세부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출 연 금	○장학재단 출연금
	= 2,612,651천원
	-AI 서울 테크 대학원 장학금(석사) 5,000,000원*350명 = 1,750,000천원
	-AI 서울 테크 대학원 장학금(박사) 7,500,000원*100명 = 750,000천원
	-장학생 선발 관리비(심사 및 사업 운영비, 인력운영비) 112,651,000원 = 112,651천원
	증감사유
	- AI 분야 우수인재 2학기 추가 선발 : (상반기) 석사 60명 → (하반기) 석사 350명, 박사 100명
	- 심사위원회, 증서수여식, 전문가 강연 등 운영비 및 계약직 등 인건비 반영

- 본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된다면, 장학재단의 교육기회확대·우수역량지원사업비 총액(106억원) 중 단일 사업 기준 30.4%(총32억, 기정 6억원+추경 26,1억원)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단기간에 특정 신규 사업에 집중됨에 따른 교육복지형 장학사업(교육기회 확대사업)의 상대적 위축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2025년 예산 기준으로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은 3억 6천만원 수준이며,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은 3억원, ‘서울꿈길장학금’은 2억원,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은 3억 2천만원 등 낮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 본 사업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32억 1천만원(기정 6억원+추경 2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존 장학사업들과 비교할 때 편중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

〈市 출연금 장학사업 예산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		'25년 추경(안)(A)	비율
장학사업운영 합계		10,575,783	100
교육 기회 확대 사업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3,149,993	29.8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2,050,503	19.4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360,000	3.4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315,500	3.0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301,100	2.8
	서울꿈길장학금	200,000	1.9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50,000	0.5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31,800	0.3
	우수 역량 지원 사업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54,000	2.4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650,236	6.1
	S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3,212,651	30.4

※ 2025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구성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더불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장학재단 설립 목적의 양대 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장학재단은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등 ‘우수역량지원사업’ 3개와 서울희망대학진로 장학금 등 ‘교육기회확대사업’ 8개의 장학금 지원사업을市 출연금으로 추진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장학재단 市 출연금 장학금지원 사업내용〉

(우수역량지원사업 - 3개)

-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실천적 인재 육성
-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 AI 산업 육성의 최우선 과제인 인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설하여 핵심 인재 발굴 및 육성

(교육기회확대사업 - 8개)

-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 저소득가정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 저소득가정 고등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 지원
-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제공
-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 학문을 넓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교환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
-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 학비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 지원
- 서울꿈길장학금 :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탐색과 개발활동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
-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 서울런 우수 멘토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진로·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우수인재 육성
-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 하나고등학교 저소득 가정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특히, 1인당 연간 장학금 수혜 규모를 살펴보면,

- 타 장학금은 60~550만원인데 반해, 본 사업의 석사과정은 연간 1인당 1,000만원, 박사과정 1인당 1,500만원에 달하는 등 장학금액도 가장 큰 규모로,
- 타 장학사업과 비교할 때 예산 규모 및 수혜 단가 모두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집중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에 제약을 받는 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의 상대적 축소 우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市 출연금 장학사업 1인당 연간 지원액〉

(단위 : 만원)

구분			1인당 지원액
장학사업운영			
교육 기회 확대 사업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최대 400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200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300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최대 550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150
		서울꿈길장학금	200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100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60(평균, 기숙사/급식비)
	우수 역량 지원 사업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400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350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석사 1,000, 박사 1500

- 또한, 본 사업은 올해 상반기 60명의 석사과정 장학생을 이미 선발하였으며 지원자는 88명으로, 경쟁률이 1.5:1에 불과한 것은 장학금의 인지도나 사업 초기 단계의 한계로 해석될 수 있다 할지라도,
수요의 규모가 적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경쟁률 및 실제 수요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확대된 것은 아닌지, 충분한 성과 검토나 수요 분석 없이 양적 확대(사업 첫해임에도 금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8배에 가까운 총 450명(석사 350명, 박사 100명)을 선발)가 우선시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음.
- 종합적으로 정책형 장학사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투자 선행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수혜 대상자 확보 가능성, 장학생의 연구역량 검증, 실질적 연구성과 도출 체계 등이 함께 설계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예산 소진 중심의 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요에 기반한 단계적 확대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전반기 장학금 일정(접수 4.14 ~ 장학증서 수여식 6.17)과 본 사업 확대 규모를 고려할 때 하반기에 충분히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전반기 성과 검토 후 202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출연 시기 및 동의를 적정성

- 금번 출연동의안은 2024년에 이미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된 2025회계연도 당초 출연금 외에, 신규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²⁾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며, 이와 관련 본예산 편성에서 의회 출자·출연동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출자·출연금을 추가 편성할 시 별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어 ‘고유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법령 해석한 바 있음(세부내용 붙임 참조).

〈 법제처·행정안전부 법령해석(2019) 결과 요약 〉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의회 사전 동의
1	‘ <u>고유사업의 범위 내</u> ’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	반드시 이행할 필요 X
2	사업내용의 변동이 ‘ <u>고유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u> ’ 경우	반드시 이행할 필요 O

2)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학재단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고자 서울시가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명시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이라는 재단 고유 목적에 부합하며, 그 사업의 세부적 확장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고유사업 범위를 넘는 경우 별도 출연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며, 이번 출연동의안 제출은 법령상 엄격히 규정된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임.
- 다만, 출연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동일 회기에서 제출하는 상황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의회의 사전 동의’ 취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으며,
- 서울시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출연동의안을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앞선 회기에 제출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임 재 빈
---------	-------	-----------	-------

붙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출자·출연 사전동의안 제출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I·SEOUL·U
더 나은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출자·출연 사전동의안 제출 안내

1.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12호(2019.01.3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출자·출연동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출자·출연금을 추가 편성할 시 별도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를 알려드리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출자 또는 출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실·본부·국(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 결과(요약)

-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어 고유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붙임 1.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 회신문 1부.
2.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안건 회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관과01-162,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사01-42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박경길

공기업담당관

03/08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935 (2019.3.8.) 접수 지역상생경제과-2394 (2019.3.18.)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장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법제처



수신 서울특별시시장(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18-0618)에 대한 검토처리(협의) 결과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출자·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법령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출자·출연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이라고 하여 귀 기관과 동일한 의견임을 확인하였습니다.(붙임 1의 행정안전부 공문 참고)

4. 따라서 귀 기관의 법령해석 요청사항은 협의 처리되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법령해석 안건(18-0618) 관련 의견 추가 회신. 끝.



행정사무관

김지혜

-

곽경림

법령해석국장

전결 01/31
이강섭

협조자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안건(18-0618) 관련 의견 추가 회신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9(2019.1.25.)호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검토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출자·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출자·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다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의결 사항의 변동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관인생략

주무관 인재용 행정사무관 장강혁 재정정책과장 전결 2019.1.30. 김성기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506 접수 법령해석총괄과-445 (2019.01.31.)

우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2-2100-3520 팩스번호 02-2100-3502 / ahn87sys@mail.go.kr / 비공개(5)